

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

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

계도기간 10.13.(화)-11.12.(목)

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

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,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단속근거

감염병예방법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

집중 단속 장소

①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②대중교통 ③집회·시위장 ④의료기관 및 약국 ⑤요양시설

단속행위

- ①위 단속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※허가된 마스크:KF94, KF80, KF-AD(미착용)
- ②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

과태료

▶근거:감염병예방법 제83조(과태료) ▶부과금액:10만원(미착용 당시지)

- 실내 전체 +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권고
-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